충청북도공고 제2017 -401호

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2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	시 험 과 목	주 요 임 무	근무예정기관
청원경찰	2명	한국사, 일반상식	청사방호·경비 및 민원인 안내 등	충청북도

2. 시험방법

가. 시험단계

구 분	1차 시험	2차 시험	3차 시험
청원경찰	필기시험 (4지 택 1형)	체력시험	면접시험

※ 전(前)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나. 필기시험 : 10:00~10:40(40분간), 과목별 20문항, 과목별 100점 만점

다. 체력시험 : 종목 및 배점(붙임1), 측정방법(붙임2)

라. 면접시험 :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기술, 능력,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적격자 선발

마.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

○ 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%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함

○ 2차 체력시험은 6개 종목의 총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
- 6개종목 : 악력, 배근력,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, 제자리멀리뛰기, 윗몸일으키기, 왕복오래달리기

○ 3차 면접시험은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. 다만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%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.

※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
- 청원경찰로서의 적성(20점) / 전문지식·기술과 응용능력(10점) /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(10점),
- 예의·품행·성실성 및 봉사정신(10점) /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10점)

❍ **최종합격자는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고 시험단계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, 필기시험성적 65%, 체력시험성적 25% 및 면접시험성적 10%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** **※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**

❍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

3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

❍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,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(결격사유),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(당연퇴직) 3호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. **(응시자격의 적용기준일은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)**

나. 거주지 제한 :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

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(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,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

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
※ 행정구역이 통·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됨

> 예시: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(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·행산리·갈산리·부강리·문곡리·금호리·등곡리·노호리 일원)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다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※ 다만,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

라. 신체조건(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)

❍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

❍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은 양쪽 눈이 각각 0.8이상일 것

마. 기 타

❍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
❍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

4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원서접수 및 취소기간	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청원경찰 채용시험	◦ 접수기간 : 4. 12.(수)～4. 14.(금) ◦ 취소기간 : 4. 12.(수)～4. 19.(수) ※접수·취소시간 : 09:00～21:00	필기시험	4. 21.(금)	**4. 29.(토)**	5. 11.(목)
		체력시험	5. 11.(목)	**5. 26.(금)**	6. 1.(목)
		면접시험	6. 1.(목)	**6. 21.(수)**	6. 23.(금)

※ 시험장소 공고,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 『시험채용』 란에 게시
▸ **최종합격자 공고일 : 2017. 6. 23.(금)**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

❍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서만 접수합니다.

※ **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,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☎1522-0660로 하시면 됩니다.**

나. 접수 및 취소시간

❍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:00～21:00까지 입니다.

다. 응시수수료 등 비용

❍ **응시수수료 5,000원**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
❍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(단,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)

❍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
라. 사진등록

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규격은 해상도 100DPI, 3.5㎝×4.5㎝입니다.

❍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(배경사진 등 불가).

❍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유의사항

❍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❍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6.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

가. 시험문제는 **충청북도에서 출제하며, 공개하지 않습니다.**

나. **시험종료 후에는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며,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**

7. 응시자 주의사항

가. **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『시험채용』란에 공고합니다.**

나. **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**

다.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라.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마. **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면접시험 종료일까지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**

바. 시험당일은 **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중 1개)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**하고 **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**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사. **시험시간 중에 통신·계산·재생·열람기능이 있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태블릿 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 또는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.**

아.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**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만을 사용**하여야 하며 **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답안 정정은 불가하며 답안표기 정정 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합니다.**
(수정스티커,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 사용 시 해당문항 무효 처리)

자. **청원경찰 체력시험은 '붙임 2'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.**

차. 부정행위 등 금지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1. **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**
2. **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4. **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**

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43-220-2532,2534,2536)

<붙 임 1>

청원경찰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

종 목	성별	평 가 점 수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
악력 (kg)	남	45.3~48.0	48.1~50.0	50.1~51.5	51.6~52.8	52.9~54.1	54.2~55.4	55.5~56.7	56.8~58.0	58.1~59.9	60.0 이상
	여	27.6~28.9	29.0~30.2	30.3~31.1	31.2~31.9	32.0~32.9	33.0~33.7	33.8~34.6	34.7~35.7	35.8~36.9	37.0 이상
배근력 (kg)	남	147~153	154~158	159~165	166~169	170~173	174~178	179~185	186~194	195~205	206 이상
	여	85~91	92~95	96~98	99~101	102~104	105~107	108~110	111~114	115~120	121 이상
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(㎝)	남	16.1~17.3	17.4~18.3	18.4~19.8	19.9~20.6	20.7~21.6	21.7~22.4	22.5~23.2	23.3~24.2	24.3~25.7	25.8 이상
	여	19.5~20.6	20.7~21.6	21.7~22.6	22.7~23.4	23.5~24.8	24.9~25.4	25.5~26.1	26.2~26.7	26.8~27.9	28.0 이상
제자리 멀리 뛰기 (㎝)	남	223~231	232~236	237~239	240~242	243~245	246~249	250~254	255~257	258~262	263 이상
	여	160~164	165~168	169~172	173~176	177~180	181~184	185~188	189~193	194~198	199 이상
윗몸 일으키기 (회/분)	남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 이상
	여	33	34	35	36	37	38	39	40	41	42 이상
왕복 오래 달리기 (회)	남	57~59	60~61	62~63	64~67	68~71	72~74	75	76	77	78 이상
	여	28	29~30	31	32~33	34~36	37~39	40	41	42	43 이상

<붙 임 2>

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악 력 (kg)	○ 측정 장비 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배 근 력 (kg)	○ 측정 장비 : 배근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°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.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(cm)	○ 측정 장비 :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(전자식 측정기 가능), 매트 1개 ○ 측정 단위 : cm ○ 측정 방법 -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.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. -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. - '시작'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. -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. -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. -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유의사항 :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.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제자리 멀리뛰기 **(cm)**	○ 측정 장비 : 구름판 및 모래터(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)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○ 측정 기록 : cm ○ 측정 방법 :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(신체의 어느 한 부분)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윗몸 일으키기 **(회/분)**	○ 측정 장비 : 매트(윗몸일으키기대,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○ 측정 기록 : 회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° 이상 일으킨다.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.
왕복오래 달리기 **(회)**	○ 측정 장비(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-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- 녹음 CD : 별도 ○ 측정 기록 : 단위(회) ○ 측정 방법 -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 - 출발신호원의 '출발'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 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'출발'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 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 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
비 고 :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(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)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